

『2021년 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』

지원대상기업 공개모집 공고

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「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」의 지원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1.07.05.

(재)김해시복지재단



1. 공모사업명 : 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

2. 공모사업 개요

▣ 지원 대상 : 김해시 관내 사업장 2곳

▣ 지원 자격

- 김해시 관내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~300인 미만 사업장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*창업 기업의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*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
- 여성친화일촌기업(5인~300인 미만)

*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
※ 상시 근로자 수는 필수이며, 그 외의 지원대상기업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업장

▣ 지원금액

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00만원)

▣ 지원내용

○ 시설환경개선 대상

-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(수유실) 등
-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

※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신청은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 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업체에 한함(단, 조선업 관련 산단, 공업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% 이상 시 허용 - 관련 증빙자료 철저히 구비)

○ 물품구입

- 시설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 가능

※ 단,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물품은 지원불가

〈지원 가능 물품〉

-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-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·난방기, 공기청정기, 침대, 유축(수유)기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-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*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(시도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 승인 필요)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(단,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)

-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(상기표 참조)
-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의자, 소파 등

○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
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
-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

※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
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■ 모집 절차 및 일정

- 공고기간 : 2021. 07. 05.(월) ~ 2021. 07. 30.(금) / 26일간
- 접수기간 : 2021. 07. 07.(수) ~ 2021. 08. 04.(수) / 29일간
- 심사기간(현장실사) : 2021. 08. 09.(월) ~ 2021. 08. 13.(금)
- 심사결과발표 : 2021. 08. 18.(수)
- 환경개선사업실시 : 2021. 08. 23.(월) ~ 2021. 10. 29.(금)
- 만족도조사 : 2021. 11. 01.(월) ~ 2021. 11. 12.(금)

■ 제출서류: 1~6의 서류 전부제출(7은 해당 시에만 제출)

순번	내용	비고
1	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	【별표 제50-1호 서식】
	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(창업기업용)	【별표 제50-2호 서식】
2	고용환경개선 계획서 (개선할 환경 사진 필수 첨부)	【붙임】참고
3	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	【붙임】참고
4	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	【붙임】참고
5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6	환경개선비용 견적서1부 / 타견적서 1부	별도서식없음
7	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1부	※해당 시
8	여성친화일천기업 인증서 사본 1부	※해당 시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■ 신청방법

- 방문접수 또는 E-mail 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주 소 : 김해시 신어산길 46 김해시여성센터 2층 사무실
- 이메일 : khdongbu@daum.net

3. 선정 절차

■ 서면심사

- 신청기업의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
▣ 선정방법

- 공모를 통해 신청한 업체 중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 시 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의 현장 심사 진행 후 여성고용실적, 새일센터와의 협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총점 고득점 기업체 우선선정

동점 기업 발생 시 우선 순위

1순위: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2순위: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3순위: 여성친화일촌기업(5인~300인 미만)

※ 심사위원회 심사 총점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업체선정 기준미달로 탈락처리함

▣ 현장확인

- 방 법 : 신청기업 **직접방문**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
- 기 간 : 2021. 08. 09.(월) ~ 2021. 08. 13.(금)
- ※ 접수순서에 따라 방문 예정

▣ 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- 관계부서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(내부위원, 외부위원)
- 김해시여성센터관장 및 여성센터 시설관리담당자를 내부위원에 포함하고, 여성센터 관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.
- 외부 심사위원은 건축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최소 2인 이상으로 함
- 선정평가 기준표에 의한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업 선정
- 선정된 업체는 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

▣ 최종선정 안내

- 홈페이지 공고 : 2021. 8. 18.(수)
- 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4. 기타사항

- ▣ 문의 :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담당자 류윤경 ☎310-8912